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변창흠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등의 수용·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는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17549호, '20. 10. 20. 공포, '21. 04. 21. 시행)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토지등의 수용·사용 요건의 예외)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
2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3.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공사
4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5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
6.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공사

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
2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
별표 3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가. 법 제14조제2항(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7조제2항제1호	100	150	200
나. 법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	법 제67조제2항제2호	100	150	200
다.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(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7조제1항	100	150	200
라.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(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67조제1항	150	200	250
마.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(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검사를 방해·거부한 경우	법 제67조제1항	200	250	300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조의2(토지등의 수용·사용 요건의 예외)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</u> <u>1.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</u> <u>2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</u> <u>3.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공사</u> <u>4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</u> <u>5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</u> <u>6.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공사</u> <u>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</u> <u>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</u>

방공사

2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013